

별첨 2.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

| 항 목 | 내 용 | 산정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
| 인 건 비 | 내부인건비(단시간/파견 근무자 제외)는 계상 불가하며 외부인건비(개인연구원 포함)만 계상 가능 - 총 연구비의 100%까지 계상 가능함 - 인건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(8.8%, 2023년부터 적용)공제 후 실비 지급 | 100%이내 |
| 여 비 | 연구수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출장여비 - 원내여비규정을 적용하며, 총 연구비의 20%까지 계상 가능함 - 원내 <국내여비규정>, <연수및학회국외여행지침>에 따름 | 20%이내 |
| 연구기자재비 및 시설비 | - 연구기자재비: 연구와 직접 관련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기자재의 설치,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, 컴퓨터 구입비용 등 - 시설비: 연구시설의 설치, 구입, 임차료 및 관련 부대 경비로 시약장, 책상 구입비용 등 | 실 비 |
| 재료비 및 전산처리. 관리비 | - 재료비: 시약, 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비용 등 - 전산처리, 관리비: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, 전산소모품비 등 | 실 비 |
| 수용비 및 수수료 |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, 복사, 인화, 슬라이드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수수료, 사무용품비 등 | 실 비 |
| 기술정보 활동비 | - 국내. 외전문가 활용, 국내. 외훈련, 기술정보수집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비, 학회. 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숙기료, 기술도입비 등 - 회의식비 1인당 5만원이내 적용 | 실 비 |
| 연구수당 | 해당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- 연구과제의 기여도 평가에 의거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차등 지급 - 연구수당 지급 시 기타소득세(8.8%, 2023년부터 적용)공제 후 실비 지급 | 10%이내 |

* 간접비는 책정하지 않음. 이에 대해 필요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협의함.